

의안 번호	2479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0. 2.(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0. 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0. 17.(금)

2. 제안설명 요지(보건소장 이현주)

가. 제안이유

-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 대상 및 횟수(안 제2조 ~ 제4조)
- 예방접종 기관 및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안 제5조)
-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안 제6조 ~ 제7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 제8조)

다.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주)

-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예방접종 지원의 종류와 대상 및 횟수, 예방접종 기관 및 업무의 위탁,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조 및 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부합함.
-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국가 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를 근거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국·시비 지원으로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2026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타 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황 등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참고자료(건강관리과 제공)

1. 타 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황
2.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2022~2025년)

□ 타 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황

구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시비 보조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내용	생백신 무료접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자체 사업	대상	-	-	65세 이상 구민	-	50세 이상 군민
	내용	-	-	무료접종	-	백신비 지원 *시행비는 본인 부담
	예산	-	-	구비 28천만원	-	군비 165천만원
	비고	-	조례 제정	'24.4.시행	조례 제정 중	'24.6.시행

※ 남구: 2025. 4. 4. 제정,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구: 관내 60세 이상 모든 구민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현황(2022 ~ 2025년)

구분	2022	2023	2024	2025
접종인원(명)	385	412	457	535 (목표 인원)
위탁의료기관(개소)	1	1	4	11
예산(천원)	시 자체 사업		54,550 (시70%,구30%)	64,200 (시70%,구30%)

○ 실적: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789명 실시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대비 평균 예방접종 실적을 매년 15%임)

근거법규

지역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안정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